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6.

발 의 자 : 이광희 · 김 윤 · 박해철
이주희 · 박지원 · 채현일
정진욱 · 이상식 · 조정식
송재봉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증식·복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.

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야생생물 복원사업 과정에서 행사 중심의 운영이나 관리부실로 인해 방사 과정에서 개체가 폐사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복원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·복원 또는 방사를 실시하는 경우 개체의 건강상태, 이동 및 대기시간,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, 관리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

생물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3 신설).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3(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·복원 등)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·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은 대상종 선정 기준, 복원 방법 타당성 평가, 서식지 개선·증식·방사 계획, 모니터링 계획, 전문가 참여 여부 및 증식·복원 과정의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3조의3(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·복원 등)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·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은 대상종 선정 기준, 복원 방법 타당성 평가, 서식지 개선·증식·방사 계획, 모니터링 계획, 전문가 참여 여부 및 증식·복원 과정의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